##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84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박희승·서영교·최기상

김한규 • 윤준병 • 추미애

김정호 · 민병덕 · 박홍배

김남희 • 박상혁 • 정성호

한정애 · 한민수 · 김기표

김영진 • 정준호 • 천준호

강유정 • 박성준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

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 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司法警察官吏가"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경위"를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으로 한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51조제4항 중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을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	
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	②
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	
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	
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	
도관 또는 <u>법원경위</u> 에게 輔助	<u>법원보안관리대의 대</u>
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	<u> </u>
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	<b>4</b>
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교도관· <u>법원경위</u>	법원공무
<u>또는 법원사무관등</u> 이 교도소·	<u>윈</u>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